

보도시점

(전매체) 1. 30(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 실증특례 유효기간 확대(2+2→4+2년),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확대(2+2년→4+2년)한다.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의 실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③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정비의 이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고주현 (044-204-7195)



참고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개정 취지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을 수립하고, 개선과제로 발굴된 사항 등을 지역특구법에 반영

□ 개정 주요내용

- (신청자격 확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발굴·육성을 위해 신청자격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현행) 광역지방자치단체 → (개정안) 광역+지방·특별지방자치단체(+제주 행정시장)
- (실증특례 유효기간 확대) 대규모 또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탄소중립, 의료분야 등)의 경우 안전성, 기술성 입증에 위한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
* (현행) 2년+2년(최대 4년) → (개정안) 4년+2년(최대 6년)
- (법령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안전성 입증시 규제부처는 신속하게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중기부장관에게 법령 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
* (현행) 규제부처는 필요시 법령 정비 착수 → (개정안) 규제부처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하고, 법령정비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제출
- (기타)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 → 각각 15일), ▲특구지역 이외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

□ 향후계획

-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하위법령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24.7월)

참고 2

지역특구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①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 확대	○ 광역자치단체 * 수도권 제외	○ 현행+기초·특별자치단체 +제주행정시 * 수도권 제외는 유지
②이의신청 제도 신설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 특례, 임시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부재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의 절차 신설
③절차 단축	○ 특구계획 변경시 공고·부처협의 각각 30일	○ 각각 15일
④특구 이외 지역의 사업자 참여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재정지원 없이 실증특례는 이용가능하도록 규정(고시 규정)	○ 타 지역 사업자도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토록 법률에 명시 (상향입법)
⑤실증특례 유효기간 확대	○ 2년(최초) + 2년(연장)	○ 4년(최초) + 2년(연장)
⑥규제부처 법령정비 이행 강화	○ 법령 정비 착수 의무만 규정	○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보고 후 60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 의무 신설
⑦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	○ 2년(최초) + 2년(연장)	○ 3년(최초) + 2년(연장)
⑧적극행정 촉진	○ 규정없음	○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 근거 신설
⑨기타 특례규정 현행화	○ (신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규제 특례 추가 ○ (삭제)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처리 특례 삭제(법령정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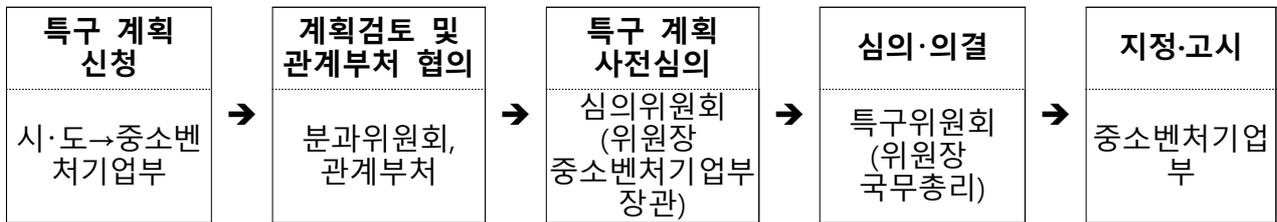
참고 3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개념)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단위로 신사업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규제샌드박스 등)로 특례를 부여한 구역
-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지정절차)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

<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



□ 지정 현황 : 14개 시·도 34개 특구 지정 → 현재 28개 특구* 운영 중

구분	합계	1차 특구 ('19.7월)	2차 특구 ('19.11월)	3차 특구 ('20.7월)	4차 특구 ('20.11월)	5차 특구 ('21.7월)	6차 특구 ('21.11월)	7차 특구 ('22.8월)	8차 특구 ('23.5월)
지정특구	34개	7	7	7	3	4	1	3	2
운영특구	28개	3	7	7	3	3	1	3	1

* 6개 특구는 규제해소 또는 실증특례 종료 등으로 특구지정 해제

□ 지정 효과

- 규제샌드박스^(①규제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와 메뉴판식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 하고, 재정(R&D, 인프라 등)을 지원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주요내용 >

- ①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i)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ii)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iii)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
- ②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i)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ii)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
- ③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 ----- -----.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u>사업으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u>	가. ----- ----- ----- <u>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u> ----- -----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u>	나. ----- ----- <u>육성하는 산업으로서</u> ----- -----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u>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u>	13. ----- <u>다</u> <u>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u> ----- ----- -----

현 행	개 정 안
<p>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14. (생 략)</p> <p>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u>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와</u>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p> <p>16. · 17. (생 략)</p> <p>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u>본다.</u>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p>	<p>----- -----.</p> <p>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u>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u></p> <p>나. <u>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u></p> <p>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u>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u></p> <p>14. (현행과 같음)</p> <p>15. ----- ----- ----- -----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p> <p>16. · 17.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 ----- ----- -----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p>

현행	개정안
<p>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u>시·도지사</u>와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 ----- -----<u>시·도지사등과</u>----- ----- -----</p>
<p>⑤ (생략)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비수도권 <u>시·도지사가</u>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p>	<p>② ----- -----<u>시·도지사등이</u>----- ----- -----</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u>시·도지사가</u>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p>	<p>③ -----<u>시·도지사등이</u>----- ----- ----- ----- ----- -----</p>
<p>④ (생략)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 ⑥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비수도권 <u>시·도지사</u>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허가등의 의제 관련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이와</p>	<p>⑦ -----<u>시·도지사등</u>----- ----- ----- ----- ----- -----</p>

현 행	개 정 안
<p>관련한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 ----- -----.</p>
<p>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u>시·도지사</u>에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u>시·도지사</u>는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u>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⑧ ----- -----<u>시·도지사</u>등에 <u>개</u>----- ----- -----<u>시·도지사</u>등은----- -----.</p>
<p>⑨ (생략)</p> <p>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⑨ (현행과 같음)</p> <p>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① --- ----- -----.</p>
<p>1. ~ 6. (생략)</p> <p>7.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변경·<u>취소</u>에 관한 사항</p> <p>8. 규제자유특구 내 <u>임시허가</u> 및 <u>취소</u>에 관한 사항</p> <p>9.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u>시·도지사</u>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취소·재심의</u>-----</p> <p>8. -----<u>임시허가·변경·취소·재심의</u>-----</p> <p>9. ----- -----<u>시·도지사</u>등----- -----</p>
<p>10. · 11. (생략)</p> <p>② (생략)</p> <p>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u>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라 한다)</u>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비수도권 <u>시·도지사</u>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10.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비수도권 시·도</u>등의----- ----- ----- ----- ----- ----- ----- -----<u>시·도지사</u>등-----.</p>

현 행	개 정 안
<p>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u>규제자유특구기획단</u>을 둔다.</p> <p>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u>시·도지사</u> 및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u>규제자유특구기획단</u>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u>시·도지사</u>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u>시·도지사</u>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u>규제자유특구기획단</u>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특구혁신</u> <u>기획단</u>-----.</p> <p>③ ----- ----- -----<u>시·도지사등</u>----- -----<u>특구</u> <u>혁신기획단</u>----- -----.</p> <p>④ ----- -----<u>시·도지사등</u> <u>에</u>----- ----- -----<u>시·도지사등</u> <u>은</u>----- -----.</p> <p>⑤ ----- -----<u>특구혁신기획단</u> ----- -----.</p>
<p>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생략)</p> <p>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u>시·도</u>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비수도권</u> <u>시·도등은</u>----- ----- -----.</p>
<p>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p> <p>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u>시·도지사</u>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p> <p>① -----<u>비수도권 시·도</u> <u>지사등은</u>----- ----- ----- -----.</p>

현 행	개 정 안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u>시·도지사에게</u>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u>시·도지사는</u>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 -----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u>에게</u>-----<u>비수도권</u> <u>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u>----- -----.</p>
<p>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u>시·도지사에게</u>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p>	<p>⑦ ----- ----- ----- ----- ----- ----- ----- ----- ----- -----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p>
<p>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u>시·도지사는</u>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u>비수도권</u> <u>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u>----- -----.</p>
<p>⑨ (생략)</p>	<p>⑨ (현행과 같음)</p>
<p>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u>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u>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u>시·도지사에게</u>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 ----- ----- ----- ----- -----<u>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u>-----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p>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u>시·도지사는</u>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u>시·도지사는</u>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u>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u> 신청하여야 한다.</p> <p>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u>시·도지사에게</u>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u>시·도지사는</u>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u>----- ----- -----.</p> <p>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u>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u>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u>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u>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u>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u>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u>규제자유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u> 재심의를</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p> <p>② 중소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p>	<p>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p> <p>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⑩ -----제9항-----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p> <p>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p> <p>②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p>

현 행	개 정 안
<p>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p>	<p>----- ----- ----- ----- ----- ----- -----</p>
<p>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 ----- -----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 ----- -----</p>
<p>⑩ 제86조제4항 및 <u>제6항에도</u>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⑩ -----<u>제9항에도</u>----- ----- ----- ----- ----- ----- -----</p>
<p>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⑪ ----- ----- ----- ----- ----- ----- -----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p>
<p>⑫ (생략) <u><신설></u></p>	<p>⑫ (현행과 같음) ⑬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u></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u>시·도지사</u>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u>시·도지사</u>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 -----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p>
<p>④ (생략)</p> <p>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u>시·도지사</u>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 ----- ----- ----- -----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 -----.</p>
<p>1. 2. (생략)</p> <p>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u>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 -----.</p>
<p>③ ~ ⑥ (생략)</p> <p>⑦ 중소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u>시·도지사</u>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u>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심의·의결 결과</u>-----<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에게-----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 -----.</p>
<p><신설></p>	<p>⑧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u>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u>생태계보전협력금</u></p> <p>7.·8. (생략)</p> <p><u><신 설></u></p>	<p>②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생태계보전부담금</u></p> <p>7.·8. (현행과 같음)</p> <p><u>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 등의 적용 특례) ①</u> <u>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u></p> <p><u>②</u> <u>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③</u> <u>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u></p>
<p>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부터</p>	<p>제113조(준용) ----- ----- -----</p>

현 행	개 정 안
<p>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생략)</p> <p>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커목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41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략)</p>	<p>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 제2조제9호----- ----- ----- -----</p> <p>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p> <p>제141조의3(포상) 중소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1조의4(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141조의2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3조(과태료)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4. 제9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u>시·도지사</u>가 부과·징수한다.</p>	<p>제143조(과태료)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90조제14항----- ----- ----- -----</p> <p>② ----- ----- -----<u>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u>----- -----.</p>